

-계약번호 : 호-



대표자 : 대표이사 김 선 무 (인)

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6조, 제7조, 제8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서울터널 주식회사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안전점검의 실시자인 (주) 명성엔지니어링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갑”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“을”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·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,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고 필요시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진단·점검의 범위) 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설물명 : 시설물(신원여의지하도로, 램프, 수직갱, 건축물, 방음터널)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~ 영등포구 여의대로
3. 제 원 : L= 7.53km

제3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2022년 06 월 22 일 ~ 2027년 04 월 15일 이다.(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기간 확인후 내용 일치 필요)

② 다만,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)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계약상대자의 견적서에 의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안전점검의 항목 및 수량의 증·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3조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)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술용역공정예정표
2.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
3.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

-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대가의 지급 등) 본 용역의 대가 지급은 준공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7조(실시자의 의무) ① “을”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,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.

② “을”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“갑”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·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“을”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안전점검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시결과의 통보) ① “을”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“갑”에게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제하도급 금지) “을”은 “갑”과 계약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제하도급할 수 없다.

제10조(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) ① “을”은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“갑”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·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갑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“갑”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리주체의 의무)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시설물의 상태평가·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

비교평가하기 위하여 “갑”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 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갑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“갑”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“을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인·허가 사항 등) “을”이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·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갑”은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하자보증)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“발주자”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
단) 유가증권,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4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
2. “갑” “을”이 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
3. “갑”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“을”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
4. “을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

제15조(보안사항) “을”은 안전점검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·후를 막론하고 “갑”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.

제16조(이행 의무사항) “을”은 입찰(‘22.06.17) 시 제공받은 ‘견적의뢰서’, ‘입찰설명서’, ‘질의회신(e-mail)’ 등 제공받은 조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▷ 점검 및 보고서 작성 시기

구 분	정기안전점검	정밀안전점검	점검횟수	비고
2022년	2회(상·하반기)		2	
2023년	2회(상·하반기)		2	
2024년	1회(하반기)	1회('24.03월 이내)	2	
2025년	2회(상·하반기)		2	
2026년	1회(하반기)	1회('26.03월 이내)	2	제3종시설물 포함
2027년	1회('27.03월 이내)		1	제3종시설물 포함
계	9회	2회	11회	

※ 참고사항

- 1) 상반기 :1월~6월사이, 하반기 : 6월~12월
- 2)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
- 3) 점검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FMS 기한 내 등재 조건
- 4) 수행 시기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내 발주자의 요구시점에 수행
- 5)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변동 예정
- 6) '26년 상반기부터 3종시설물 포함하여 점검



변 경 계 약 내 역 서

(단위:원. VAT제외)

공종명	규격	구분	수량	단위	계 약		비 고
					단가	금액	
공급가액		당초				354,350,000	
공급가액		변경				366,350,000	
정기안전점검비(제1.2종)		당초				354,350,000	
정기안전점검비(제1.2종)		변경				354,350,000	
- 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	당초	9	회	17,890,000	161,010,000	
- 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	변경	9	회	17,890,000	161,010,000	
- 정밀안전점검	1~3년에 1회	당초	2	회	96,670,000	193,340,000	
- 정밀안전점검	1~3년에 1회	변경	2	회	96,670,000	193,340,000	
정기안전점검비(제3종)		당초					
정기안전점검비(제3종)		변경				12,000,000	
- 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	당초		회			
- 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	변경	2	회	2,500,000	5,000,000	
- 정밀안전점검	1~3년에 1회	당초		회			
- 정밀안전점검	1~3년에 1회	변경	1	회	7,000,000	7,000,000	

※ 참고사항

- 1) 제경비는 점검비용에 포함